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00

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사건본인 \triangle \triangle

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토지의 처분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법원 2013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 었습니다.
-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감독인 ▽▽▽는 정 당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2000년 0월 0일

위 청구인 ㅇ ㅇ (인)



부동산의 표시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157.4㎡.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 사건절차법 제20조제1항) ·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10회분		